

의안번호	2205403
의 퇴 인	박해철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7.
추계번호	24B4951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 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제1항제5호 신설	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<u>5. 기업간 순환원료의 거래·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</u>	재량규정
2	안 제16조 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제3항 신설	환경부장관은 원료생산자가 제2항 ¹⁾ 에 따른 기준을 준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음(제3항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제1항제5호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제3항 신설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 제16조제2항에 따른 “원료생산 자”에는 “재활용지정사업자”, “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”가 포 합되고 원료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도 현 재활용 여건을 고려 시 유사할 것을 고려하면 안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 관 련 비용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²⁾

1) 안 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② 종이, 유리, 금속,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원료생산자”라 한다)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순환원료의 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.

2) 환경부에 따르면, 현재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은 없으며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정규 인력 2명이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조사·관리 중

[표] 재활용지정사업자 현황('23년말 기준)

구분	계	종이류		유리용기류	제철 및 제강		플라스틱
		폐지	골판지		철스크랩	폐철캔	페트
업체수(개소)	116	41	27	4	14	5	25
이용목표율	-	90%	110%	67~78%	50%	130천톤	3%

자료: 환경부

2. 상세 사유

□ 기업간 순환원료 거래·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(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)

-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업간 순환원료의 거래·교환 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를 추가하는 것임
- 환경부에 따르면,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(정부안)에 순환원료 사용촉진 사업³⁾으로 8억원을 반영한 상태임

[표 1] 순환원료 사용촉진 사업

- (사업목적) 천연자원에 대비되는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체계 구축(`25~)
- (사업내용) 순환원료 생산·판매 실태 조사 및 DB 구축*,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 운영
 - * 순환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'25년 예산은 실태조사 비용이며,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'26년 ISP를 수립하여 순환원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을 산정할 예정
- (산출내역) 순환원료 생산·판매 실태조사 및 DB 구축 400백만원,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관리 체계 구축 400백만원
 - 순환원료 생산·판매 실태 조사 및 DB 구축 : 400백만원
 -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승인 업무 200백만원(200건 × 1백만원)
 -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관리 및 목표설정 연구 200백만원
 - (대상관리) 100백만원=25개소(PET 최종제품생산자) × 4회/년 × 1백만원
 - (제도연구) 100백만원=1회 × 100백만원

자료: 환경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

- 환경부에 따르면, 2025년 예산이 반영될 경우 순환원료 생산·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순환원료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, 동 시스템을 통해 순환원료 활용 현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기업간 순환원료의 거래·교환에 필요한 정

3) 자원순환촉진지원사업(환경개선특별회계, 1431-303)의 내역사업임

보를 제공할 계획이나,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을 2025년 실태조사 이후 2026년에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, ISP 수립 이후에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순환원료 사용촉진 사업 현황

- 환경부에 따르면 법 제16조에 따른 순환원료의 사용촉진 사업은 현재 운영중이지 않으나,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R&D 사업은 6개사업 35,112백만원 추진 중('24년 기준)

[표] 순환경제 R&D 사업 현황(2024년)

(단위: 백만원)

소관부처	사업명	사업기간	사업비	
			총사업비	'24년
환경부	폐자원 활용 에너지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	'22~'26	14,598	4,698
	폐플라스틱 활용 원료 연료화 기술개발사업	'22~'25	20,440	7,590
	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기술개발	'22~'24	18,555	6,405
	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 원료화 기술	'22~'25	10,700	4,200
	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	'24~'27	미정	4,700
	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	'21~'24	29,215	7,519
산업통상자원부	차세대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 기술개발	'23~'26	해당없음	3,626

자료: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[참고자료 2] 순환원료 사용 촉진 사업설명자료⁴⁾

□ 추진 배경

- 글로벌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필요
 -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제품 구성비 및 순환이용성 등 정보 공개, 재생원료 비율 등 신설 전망되며, EU,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순환경제 정책을 산업에 대한 규제로 적용
 - *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5회 개최('22.11~'24.11) → 외교전권회의·협약 확정('25년)

<국내외 재생원료 규제 동향>

- (EU) 음료 PET용기에 재생원료 25%('25~), 모든 음료 플라스틱 용기에 30%이상('30~)
- (美 캘리포니아)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50%('30~)
- (국내) 現 PET 연간 1만톤 이상 원료생산자에게 이용목표를 부여
 - * PET 최종제품생산자로 의무사용 대상 확대 예정('30년까지 30%)

- 국내도 순환경제사회법 마련으로 순환원료 사용촉진사업 신설하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 등 도입

<순환경제법 하위법령 마련 포럼 시 산업계 의견>

- 자원순환의 가장 큰 현안은 **폐자원의 가치 유무를 확인하는 정보를 생산·공유하는 것**
-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공적으로 **순환원료 사용제품 인증과 양질의 순환원료를 안정적으로 계속 구입할 수 있는 곳**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가장 필요

□ 사업개요

- (추진근거)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6조, 제39조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
 - ※ 국정과제 제89번(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),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(PET 1만톤/년 이상 생산자)하고 관련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, 국제표준 기반의 재생 원료 사용 표시제 마련('23~)
- (사업내용) 천연자원에 대비되는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

4)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체

재생원료 사용관리체계를 구축

－ 순환원료 생산·판매 실태 조사 및 DB 구축 400백만원

※ (구축 방안) 실태조사(구축방향 설정) → ISP 수립 → 종합관리시스템 구축

* 생산 → 소비 → 폐기 → 재활용 → 순환(재생) 원료 생산 → 원료 공급 → 생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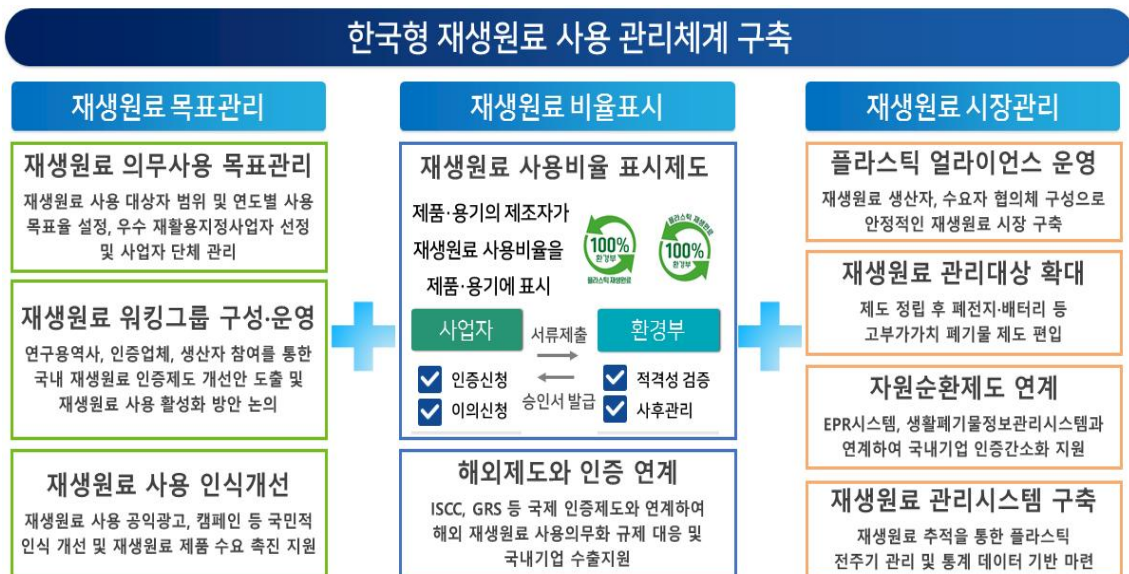
← 폐기물 통계 → ←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 구간 →

－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 운영 400백만원

① (의무사용)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여, 재활용원료 이용 목표율 준수 조사·관리

② (사용표시) 재생원료 비율표시 제도운영, 표시제도 대상업체 정기·수시 조사, 해외 인증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
③ (시장관리) 공급자-수요자간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·운영



○ (지원형태) 민간 위탁(한국환경공단)